

2026. 10.

일본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교수

장예영

1. 제정경위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2023. 6.)이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AI 시대의 지적재산¹⁾의 존재방식”을 중심시책의 하나로 삼은 이래, 내각부의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는 2024년 5월 중간정리(中間とりまとめ)를 공표하였다. 이후 AI 기술의 혁신 촉진과 리스크 대응의 양립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통칭 ‘AI 법’)이 2025년 5월 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²⁾.

2025년 1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인공지능 기본계획³⁾」에 지적재산 보호와 투명성 확보 방침이 명기된 것을 계기로 프린시플 코드의 검토가 본격화되었다. 검토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이 실시되었고, 2026년 8월 18일 최종안이 승인된 뒤 8월 25일 정식 결정되었다.

「생성형 AI의 적절한 이용 등을 위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이하 ‘코드’)는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데이터 취득 방법 등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사이의 “질서 있는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프린시플 코드)에 해당한다. 학습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와 설명을 유도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업자의 자발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올가을부터 신고를 접수하며, 수용 의사를 명기하되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정부는 신고한 사업자를 공표한다. 이하에서는 코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 코드의 내용⁴⁾

1) 일본 정부 문서의 ‘知的財産’이라는 원문 표현에 따라 ‘지적재산’으로 표기하였다.

2)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AI 法), https://www8.cao.go.jp/cstp/ai/ai_act/ai_act.html ; 일본 정부홍보 온라인, https://www.gov-online.go.jp/hlj/ja/november_2025/november_2025-08.html

3)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人工知能基本計画, https://www8.cao.go.jp/cstp/ai/ai_plan/ai_plan.html

4)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生成 AI の適切な利活用等に向けた知的財産の保護及び透明性に関するプリンシプル・コード,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pdf/ai_principle_code.pdf ; 概要開示対象事項 具体例,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pdf/ai_principle_code_gutairei.pdf

1) 성격

목적은 “생성형 AI 기술의 진보 촉진과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의 양립”이며,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다(코드 §1(1)). 특기할 만한 점은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즉 규정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1(1)).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설명자료도 EU의 AI Act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스튜어드십 코드⁵⁾를 참고하면서 AI 개발자·제공자와 권리자·이용자 사이에 ‘공동창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리한다⁶⁾.

코드의 성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1(3)). 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다. ②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민감정보(영업비밀 및 안전성·보안에 관한 정보)의 강제적 개시(開示)는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원칙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comply or explain).

2) 가시화 장치

코드를 수용한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웹사이트 등에 수용 사실을 표명하고, 각 원칙의 이행사항 및 미이행 사유를 공표할 것, ②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 정한 양식으로 신고할 것, ③ 원칙적으로 매년 재검토·갱신할 것(§1(4)).

사무국은 참고 양식을 마련하고 신고 사업자의 목록과 웹사이트 링크를 공표하며, 관계 부처·단체의 협력을 얻어 각 업계에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한다. 다만 사무국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제3자의 조화에도 답하지 않는다(§1(4) 말미).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수용을 표명한 사업자의 목록과 기업 웹사이트 링크를 공표함으로써 그 평가를 시장에 맡기는 설계라 할 수 있다.

3) 적용 대상

코드는 적용 대상의 구분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1(2)). 자사의 AI 서비스가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핵심에 해당한다.

코드는 「생성형 AI 개발자」와 「생성 AI 제공자」를 총칭하여 「생성형 AI 사업자」로 정의하며, 양자 모두 “공중(불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에 대한 실질적 제공”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위탁을 받아 모델·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수집(구입 포함), 전처리, 학습·검증 등 구축과정의 일부만을 담당하여 납품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중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연구·개발에 그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단일 법인이나 특정 기업그룹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특화시킨 시스템을 한정된 범위의 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업계 특화형은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그 범위는 범용 모델에

5) 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행동규범.

6) AI 知財プリンシプル・コード－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と意見交換 (週刊経団連タイムス, 2026년 2월 5일 No.3716),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6/0205_03.html

부가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직접 감득(感得)할 수 없는 생성물이나 의사결정에 이바지하는 통계·추론 결과에 그치는 생성물이 대부분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일본 국내에 제공하는 이상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4) 원칙 1: 개요 개시(開示)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업 웹사이트 등에 다음의 개요를 개시한다. 개시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설명(explain)한다(§2(1) 원칙 1).

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구분	개시 항목
사용 모델	명칭(식별자·버전), 공개일을 포함한 내력(과거 버전·수정이력), 아키텍처·설계사양(제3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상황,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용규정(상정 용도 및 제한·금지 용도의 명확화), 트레이닝 프로세스의 내용
학습 데이터	학습·검증에 사용된 데이터에 관한 사항(데이터의 종류(RAG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웹크롤링이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비공개 데이터셋, 공개 데이터셋, 그 밖의 수단으로 수집한 데이터, 합성 데이터의 이용 여부 및 목적), 크롤러(목적, 데이터 수집기간, 명칭·식별자, 제3자 크롤러의 이용 여부 및 그 명칭·식별자)
어카운터빌리티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적·소급이 가능한 상태(추적가능성의 향상, 책임자의 명시, 관계자 사이의 책임 분배,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 문서화)

일본의 코드가 입력(input), 즉 AI 학습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비하여, 한국의 AI 기본법은 제 31 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와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 의무, 즉 출력(output)의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초점이 다르다.

②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의 수립과 책임 체제의 명확화, 연 1회 이상의 재검토 및 그 요지의 외부 공표
- 개발·학습 등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페이지 등 접근제한이나 robots.txt 등 기계가독적 지시에 따르는 크롤러를 채용하고, 권리자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유저에이전트별로 위 조치를 공개하며 변경 시 통지할 것
- 학습에 관한 로그를 일정 기간 보유할 것(코드는 이와 관련하여 총무성·경제산업성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제1.2판)」 19쪽의 검증가능성 확보 항목을 인용한다)
- 불법 사이트 등에 대한 크롤링을 회피할 것
- 침해 생성물의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가능한 한 강구할 것
- 전자워터마크, C2PA 등 콘텐츠의 출처와 내력을 증명하는 기술적 조치를 가능한 한 강구할 것

- 이용자에게 침해로 판단되는 생성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주지시킬 것
- 권리자의 적시·적절한 구제를 위한 창구를 정비하고, 신청 요건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며, 대응 기록을 보존할 것

5) 원칙 2: 권리자에의 개시(開示)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소송 제기·조정 신청·ADR⁷⁾ 등 법적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권리자(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을 포함한다)가 개시요구권자가 된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① 학습·검증에 사용된 데이터에 「원칙2 대조정보」(조회자가 제시하는 URL 등으로서 사업자가 용이하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개시 요구를 받은 자가 제공자로서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경우 탑재 모델을 개발한 자의 명칭이다.

개시 요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 개시요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이유, ② 이용목적의 명시와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③ 대조정보의 제시와 개시를 구하는 사유의 특징이다. 코드의 각주는 “자신의 작품이 크롤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형태의 조회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한다(§2(1) 원칙 2).

6) 원칙 3: 이용자에의 개시(開示)

해당 생성형 AI 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한 자가 개시요구권자가 된다. 원칙 2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① 생성물과 함께 그 생성에 사용한 프롬프트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② 소송 제기·조정 신청·ADR 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까지 요구된다는 점이다(§2(1) 원칙 3).

7) 설명(explain)의 실질화

수용을 표명하였더라도 이용약관으로 개시 대상을 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2(2)). 나아가 오버라이드 조항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항을 둔 이유까지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자유를 통한 규범 회피를 봉쇄한 문언이다. 각 원칙에 공통하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 부과나 횡수 제한은 가능하지만 조회를 위촉시켜서는 아니 되며, 대응체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구축 완료 시기까지 설명하여야 한다.

3. 예상되는 비판 및 전망

1) 실효성에 대한 의문

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8) Override. 계약(이용약관)을 통해 코드상 원칙을 배제·무력화하는 조항을 가리킨다.

신고는 임의이고, 사무국은 심사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의 조회에도 답하지 않는다(§1(4)). 평가를 시장에 맡기는 설계이나,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개시 내용을 검증할 능력과 자원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2) 민감정보 예외의 광범위성

영업비밀이나 안전성·보안을 이유로 한 미개시는 총론(§1(3))과 원칙 1·2·3에서 네 차례 반복하여 확인되고 있어, 학습데이터의 핵심 부분이 이 예외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EU AI Act 제53조 제1항 (d)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3) 개시 범위의 협소성

원칙 2·3의 개시 대상은 “대조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예·아니오 형태이며, 그것도 조회자가 특정한 URL·도메인에 한정된다. 코드의 각주가 “자신의 작품이 크롤링되었는가”라는 형태의 조회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개인 창작자가 침해의 단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사실상 기능하기 어렵다. 게다가 “용이하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사업자의 재량이 넓게 남아 있다.

4) 원칙 3의 서약 요건

이용자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소송·조정·ADR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설계로 인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얻은 정보를 정작 실제 분쟁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서약의 사법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이다.

5) 실체법과의 관계

코드가 저작권법 제30조의4⁹⁾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페이월과 robots.txt의 존중, 불법 사이트에 대한 크롤링 회피와 같은 행동규범은 2024년 3월에 공개된 문화심의회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¹⁰⁾」의 정리와 연결되어, 제30조의4 단서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나 침해소송에서의 과실 평가에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6) 전망

올가을 신고가 개시된 이후에는 ① 어느 해외 대형 사업자가 코드를 수용할 것인가, ② 설명(explain)의 질에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타날 것인가, ③ 사무국이 공표하는 「개요개시 대상사항 구체적 사례」가 어디까지 표준화를 진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이다. 코드 자체가 국제적 동향을 감안한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2(3)), EU의 범용 AI 행동규범(Code of Practice for General Purpose AI Models)과의

9) AI 학습 등을 포함한 정보해석·기계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 규정.

10) 상세는 이하를 참조.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4.1. 게재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no=52819>)

상호참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저작권법 제30조의4를 통하여 학습 단계에서의 이용을 폭넓게 허용해 온 만큼, 이번 코드는 그 광범위한 면책에 대한 사후적 균형장치라는 성격을 지닌다. 명문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없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면책의 범위와 투명성 확보 장치를 하나의 세트로 설계하여야 한다는 시사를 준다.

참고 자료

- https://www8.cao.go.jp/cstp/ai/ai_act/ai_act.html
- https://www.gov-online.go.jp/hlj/ja/november_2025/november_2025-08.html
- https://www8.cao.go.jp/cstp/ai/ai_plan/ai_plan.html
- 生成 A I の適切な利活用等に向けた知的財産の保護及び透明性に関するプリンシプル・コード,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pdf/ai_principle_code.pdf ;
概要開示対象事項 具体例,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pdf/ai_principle_code_gutairei.pdf
- AI 知財プリンシプル・コード－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と意見交換 (週刊経団連タイムス、2026 年 2 月 5 日 No.3716) ,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6/0205_03.html
-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4.1. 게재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2819>)